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자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6.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자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정현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최근 경직된 공직 문화, 업무 부담,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공직의 인력 부족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자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5조~제6조)
- 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관련부서 : 인사과
- 라. 입법예고 : 2025. 5. 30. ~ 6. 6. (7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직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경직된 공직 문화,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량,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직무 배치를 위한 적성 검사, 공직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기존 복지제도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요인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 : 7곳 조례 제정 (경기도 제정 시군 : 0곳)

[표1]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5. 5. 기준)

순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자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5. 8.
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의회 자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5. 16.
3		원주시 자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5. 16.
4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2025. 2. 10.
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2025. 4. 14.
6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자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2. 15.
7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자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	2025. 4. 10.

■ 참고자료 2 :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현황

[표2] 2019~2023년 5년간 재직기간별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 (단위:명)

구분	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7년	7년~10년
2019년	7,817	1,734	2,274	2,492	684	633
2020년	10,941	1,583	4,209	3,217	1,038	894
2021년	12,482	2,686	4,617	3,123	1,161	895
2022년	15,859	3,064	5,277	4,691	1,590	1,237
2023년	17,179	3,020	5,629	4,917	2,050	1,563
합계	64,278	12,087	22,006	18,440	6,523	5,222

※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4. 1.

[표3] 신규임용 공무원의 일반퇴직 현황

(단위: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퇴직자(A)	37,981	47,319	44,676	54,993	57,163
신규임용 퇴직자(B)	6,500	9,009	10,426	13,032	13,566
비율(B/A)	17.1	19.0	23.3	23.7	23.7

※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4. 1.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카.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

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남양주시 저연차 지원 조례안」 제6조
(적성 검사,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추진 중인 직원 교육 및 복리후생 사업 중 저연차 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내용을 보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

※ 현재 추진 중인 교육 및 지원사항

- 공개채용시험 인적성검사(6,000천원)
-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기본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80,000천원)
-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74,000천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 규정
 - 실태조사 :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원사항 : 적성검사, 교육, 상담, 복지제도 강화 등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인사과장 이성주